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  
2023. 3. 24.

##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
(보건소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2023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0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3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3. 10.

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

#### 가. 총 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		1회추경 (안)	비 고
	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	718,317	715,594	710,357	5,237	2,723	
일 반 회 계		695,027	692,304	687,067	5,237	2,723	
특 별 회 계		23,290	23,290	23,290	0	0	
	의료급여기금	590	590	590			
	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	592	592	592			
	주 차 장	22,108	22,108	22,108			

나. 일반회계

○ 세입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 정 액			1회추경(안) (B)	비고
		소 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695,027	692,304	687,067	301	2,723	
자 체 재 원	162,357	162,357	162,357	-	0	
지 방 세	125,066	125,066	125,066	-	-	
세 외 수 입	37,291	37,291	37,291	-	-	
의 존 재 원	464,455	461,732	456,495	301	2,723	
지방교부세	19,326	19,326	19,261	65	-	
조정교부금등	140,055	140,055	139,823	232	-	
보 조 금	305,074	302,351	297,411	4,940	2,723	
보 전 수 입 등	68,215	68,215	68,215	-	0	
순세계잉여금	68,215	68,215	68,215	-	-	
보조금사용잔액	0	-	-	-	-	

○ 세출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 정 액			1회추경(안) (B)	비고
		소계(A)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695,027	692,304	687,067	5,237	2,723	
정 책 사 업	562,131	559,356	554,138	5,218	2,775	
재 무 활 동	11,868	11,868	11,868	-	0	
행정운영경비	121,028	121,080	121,061	19	-52	

#### 4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

##### 가.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1회추경(안)	증감률
<b>총</b>	<b>계</b>	<b>226,336,473</b>	<b>237,666,860</b>	<b>△11,330,387</b>	<b>△4.77 %</b>
민원	감사담당관	255,994	255,994	0	0.00 %
소통	담당관	3,793,650	3,758,650	35,000	0.93 %
행정	안전국	150,108,490	142,832,531	7,275,959	5.09 %
	행정지원과	109,885,759	109,779,319	106,440	0.10 %
	자치행정과	11,351,922	10,840,683	511,239	4.72 %
	교육지원과	24,078,802	17,720,522	6,358,280	35.88 %
	주민안전과	4,024,958	3,724,958	300,000	8.05 %
	민원여권과	767,049	767,049	0	0.00 %
기획	경제국	53,531,915	72,419,261	△18,887,346	△26.08
	기획예산과	30,974,185	53,671,599	△22,697,414	△42.29 %
	지역경제과	14,616,048	10,805,980	3,810,068	35.26 %
	일자리청년과	6,377,742	6,377,742	0	0.00 %
	재무과	464,972	464,972	0	0.00 %
	세무1과	467,531	467,531	0	0.00 %
	세무2과	631,437	631,437	0	0.00 %
<b>보</b>	<b>건</b>	<b>18,646,424</b>	<b>18,400,424</b>	<b>246,000</b>	<b>1.34 %</b>
	보건정책과	4,049,839	4,049,839	0	0.00 %
	건강증진과	11,401,090	11,401,090	0	0.00 %
	의약과	2,526,205	2,280,205	246,000	10.79 %
	위생과	669,290	669,290	0	0.00 %

## 나. 보건소 부서별 추경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사업개요	최종예산액	기정액	1차 추경(안)
						246,000
75	의약과	암환자 의료비지원	- 시비 변경내시 반영	420,000	311,000	109,000
76	의약과	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	- 갑상선 기능검사(TFT) 시 필요한 면역장비와 시약 구매	310,314	173,314	137,000

## 5. 검토의견

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

- 보건소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15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 예산에서 2억 4,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-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
  - 의약과는 갑상선 기능검사 시 필요한 면역장비와 시약 구매비로 1억 3,700만원 증액 편성, 암환자 의료비 시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억 900만원 증액 편성
-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은 암환자 의료비 시비 변경 내시로 인한 반영분과 갑상선 기능검사 시 필요한 면역장비와 시약 구매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관련 법령 1부.

### **지방자치법**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### **지방재정법**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**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 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 8. 4.]